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431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28	김남희의원	2026. 7. 29.	2026. 9. 11.
	2221227	서영석의원	2026. 9. 9.	2026. 9. 11. (「국회법」 제59조 단서 조항에 따른 긴급 상정)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9회 국회(정기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16제1항 중 “조사·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조사과정, 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재판과정”을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생략) ③ <u>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u>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u>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u>조사·검증</u>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 ----- ----- -----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u> ----- -----

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u>조사과정, 검증</u>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u>조사·검증</u>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u>수사·재판과정</u>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u> <u>담, 조사과정, 검증</u>----- ----- -----. ② ----- ----- <u>사실관계 확</u> <u>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u> ---- ----- ----- -----. ③ ----- <u>수사,</u> <u>공소 및 재판과정</u>----- ----- ----- ----- -----.
---	---